

朝鮮後期 實學者의 中央軍制 改革論

徐 台 源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1. 머리 말
2. 五衛制 復舊論
3. 五軍營 減縮論
4. 맺 음 말

1. 머리 말

조선후기 군사제도는 倭亂과 胡亂 등을 겪으면서 많은 변동과 모순을 보여주었다.¹⁾ 특히 국왕의 侍衛 및 수도의 경비·방어를 담당했던 중앙군의

1) 조선 후기 군제에 관한 단행권 및 연구사 정리 등으로는 다음의 글이 참고가 된다. 車文燮, 『朝鮮時代軍制研究』, 檀大出版部, 1973; 『朝鮮時代 軍事關係 研究』, 檀國大學敎出版部, 1996; 李泰鎮 외, 『韓國軍制史-近世朝鮮後期篇-』, 陸軍本部, 1977; 李泰鎮, 『朝鮮後期の 政治와 軍營制變遷』, 한국학연구원, 1985; 崔孝軾, 『朝鮮後期 軍制史研究』, 신서원, 1995; 吳宗祿, 『군사제도』, 『한국역사입문(2)』, 풀빛, 1995; 徐台源, 『朝鮮後期 地方軍制研究-營將制를 중심으로-』, 혜안, 1999; 김우철, 『조선후기 군사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조선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창작과 비평사, 2000; 송양섭, 『조선후기 군

경우,²⁾ 조선전기 五衛를 대신하여 壬辰倭亂 이후 五軍營이 창설되는 가운데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먼저 조선전기 오위는 양반층의 甲士 입속기피와 番上正兵의 代立을 비롯한 각종 형태의 군역 기피로 16세기에 크게 붕괴하였다.³⁾ 때문에 오위의 약화는 일본군의 조총사용 및 제승방략의 약점 등과 함께 壬辰倭亂에서 조선군이 고전하는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이에 정부는 임진왜란 중에 訓練都監을 창설하여 紀效新書法(浙江兵法)을 도입함으로써 조총으로 대표되는 일본군의 새로운 전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 하였는데, 기효신서법의 도입은 砲手의 육성은 물론이고 편제·무기·陣法·旗幟·築城·군사지휘체계 등에 변화를 초래하였다.⁴⁾ 아울러 훈련도감은 일반 군인에게도 종래와는 달리 월급을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인 군 입대유도를 함으로써 군역기피를 막아 군정을 효과적으로 확보하려 하였는데, 급료지급은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켰고 훈련도감의 경비조달을 위해 지급된 屯田은 민전을 冒屬 또는 勒定함으로써 호조의 田稅 수입을 줄이는 등의 문제점을 낳았다.⁵⁾ 다음으로 임진왜란 이후 여진족의 침략위험이 고조되자 포수 중심의 절강병법을 대신하여 對 騎兵 전법이 요청되었고, 仁祖代에는 총융청·수어청·어영청을 창설하여 군액을 크게 증가시켰음에도 병자호란에서 청(후금)에게 패하면서 청의 기병을 견제하기 위한 전차의 활용 및 오위의 복구론 등이

역제 연구현황과 과제』, 『조선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창작과 비평사, 2000; 金友哲, 『朝鮮後期 地方軍制史』, 경인문화사, 2001; 金鍾洙, 『朝鮮後期 中央軍制研究 訓練都監의 設立과 社會變動』, 혜안, 2003.

- 2) 金鍾洙, 『朝鮮後期 中央軍制研究 訓練都監의 設立과 社會變動』, 혜안, 2003, 5쪽.
- 3) 李泰鎮, 『한국군제사-近世朝鮮後期篇-』, 陸軍本部, 1977, 201-253쪽; 金鍾洙, 앞의 책, 혜안, 2003, 21-70쪽.
- 4) 徐台源, 『朝鮮後期 地方軍制研究-營將制를 중심으로-』, 혜안, 1999, 57-59쪽; 盧永九, 『朝鮮後期 兵書와 戰法の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2, 24-56쪽.
- 5) 車文燮, 『宣祖朝의 訓練都監』, 『조선시대군제연구』, 단대출판부, 1973, 170-178쪽; 李泰鎮, 앞의 책, 1977, 17-19쪽 및 136-137쪽; 金鍾洙, 앞의 책, 2003, 174-191쪽 및 269-340쪽; 宋亮燮, 『朝鮮後期 軍·衙門 屯田의 經營形態 研究』,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1.

제기되었다.⁶⁾ 아울러 孝宗은 北伐을 슬로건으로 어영군의 元戶를 약 21,000餘 戶로 증가시키고 훈련도감의 元額 1만을 목표로 훈련도감을 확장하려 함으로서 군액 및 재정적 부담을 크게 증가시켰고,⁷⁾ 현종대에는 군비 축소론이 제기되면서 훈련도감 1部가 감축되었으나 훈련별대가 창설됨으로써 오히려 군액은 증가하였으며, 숙종대에는 훈련도감의 군액 707명이 축소되었지만 축소된 군액이 훈련별대에 이속되는 가운데 訓練別隊와 精抄軍을 합하여 禁衛營이 창설됨으로써 군액은 줄어들지 않았다.⁸⁾ 때문에 임진왜란 이후 새롭게 창설된 五軍營 등은 국가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키고 軍多民少로 인한 一身兩役·군포의 폐단 등을 심화시켜 군역담당자의 몰락을 가속시킴으로서 군사력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더욱이 軍權을 둘러싼 각 당파간의 대립이 표출되었고, 顯宗代이후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자 흥년 등 자연적인 제약은 물론이고 국가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어영청·금위영 군인의 番上이 자주 정지⁹⁾되는 등 武에 대한 소홀로 인하여 국방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때문에 정부지배층과 실학자 등은 국가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고, 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면서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군제개혁론을 제기하였는데, 실학자의 중앙군제 개혁론도 그러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다. 실학자의 중앙군제 개혁론에 대해서는 17세기의 반계 유형원에 관한 1950년대 천관우의 연구¹⁰⁾를 시작으로 18세기의 성호 이익·농포자 정상기·여보 우정규·농암 유수원·담헌 홍대용 및 19세기의 다산 등에 대하여 지금

6) 盧永九, 앞의 박사학위논문, 2002, 69-144쪽.

7) 車文燮, 「孝宗朝의 軍備擴充」, 『朝鮮時代軍制研究』, 檀大出版部, 1973.

8) 李泰鎮, 앞의 책, 1977, 133-153쪽; 金鍾洙, 앞의 책, 2003, 174-191쪽.

9) 李泰鎮, 앞의 책, 1977, 228-234쪽; 한편 삼남 지방군의 조련 및 조련정지에 대해서는 '김우철, 『朝鮮後期 地方軍制史』, 경인문화사, 2001, 261-166쪽'이 참고가 된다.

10) 千寬宇, 「磻溪柳馨遠研究-實學發生에서 본 李朝社會의 一斷面-」, 『歷史學報』 2·3, 1952·53(千寬宇, 「磻溪柳馨遠研究-實學發生에서 본 李朝社會의 一斷面-」, 『近世朝鮮史研究』, 일조각, 1979, 270-280쪽 및 311-321쪽).

까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연구경향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인물을 중심으로 실학자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의 군제 개혁론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가운데, 중앙군제 개혁론을 부분적으로 언급한 경우이다.¹¹⁾ 이러한 연구는 한 인물의 군제개혁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데에는 유리하나, 동시대에 실학자로 분류되지 않은 인물이나 다른 시대의 실학자와의 비교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의 군제개혁론이 지니는 객관적인 위치를 조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다른 하나는 주제 즉 핵심 개혁안을 중심으로 실학자들 간의 견해를 상호 비교해 보거나 실학자가 아닌 사람들의 주장과 비교하여 살펴본 경우이다.¹²⁾ 비록 인물 연구에 비해

11) 실학자 한 사람의 중앙 군제개혁론을 살펴본 연구로는 다음의 논문을 들 수 있다. 첫 번째로 17세기 礪溪 柳馨遠에 대해서는 ‘千寬宇, 『礪溪柳馨遠研究-實學發生에서 본 李朝社會의 一斷面-』, 『歷史學報』 2·3, 1952·53(千寬宇, 『礪溪柳馨遠研究-實學發生에서 본 李朝社會의 一斷面-』, 『近世朝鮮史研究』, 일조각, 1979, 270-280쪽 및 311-321쪽); 宋正炫, 『實學派의 軍制改革案에 대하여-礪溪隨錄을 중심으로-』, 『湖南文化研究』 5, 1973; 金駿錫, 『柳馨遠의 政治·國防體制 改革論』, 『東方學志』 77·78·79 합집, 1993; 尹用出, 『柳馨遠의 役制改革論』, 『韓國文化研究』 6, 1993; 서태원, 『壬辰倭亂 및 孝宗의 北伐論이 內政에 끼친 영향-礪溪 柳馨遠의 軍役制改革論을 중심으로-』, 『國史館論叢』 80, 1998' 등이 있다. 두 번째로 18세기 실학자 星湖 李瀛에 대해서는 ‘韓祐旻, 『星湖李瀛研究』, 서울대출판부, 1980; 趙楨基, 『星湖의 軍政論』, 『論文集』 6-2, 마산대, 1984; 李棕浩, 『李瀛의 國防觀』, 『論文集』 6-2, 마산대, 1984; 朴原出, 『星湖 李瀛의 軍役變通論』, 『釜山史學』 22, 1998' 등이 있고, 그밖에 ‘趙楨基, 『農圃子 鄭尙驥의 國防論』, 『釜山史學』 7, 1983; 趙楨基, 『汝寶 禹禎圭의 國防論』, 『釜山史學』 9, 1985; 趙楨基, 『湛軒 洪大容의 國防論』, 『慶南史學』 3, 1986; 趙楨基, 『龔菴 柳壽垣의 軍政思想』, 『中齋張忠植博士華甲紀念論叢』(역사학편), 1992' 등이 있다. 세 번째로 茶山 丁若鏞에 대해서는 趙楨基, 『茶山의 軍政論』, 『論文集』 9-2, 창원대, 1987; 趙誠乙, 『丁若鏞의 軍事制度 改革論』, 『京畿史學』 2, 1998' 등이 있다. 한편 여러 명의 실학자를 나열하면서 그들의 중앙군제 개혁론을 살핀 논문 및 저서로는 ‘정성철, 『실학파의 철학사상과 사회정치적 견해』, 사회과학출판사, 1974(정성철, 『실학파의 철학사상과 사회정치적 견해』, 최필승 편, 한마당, 1989); 박시형, 『우리나라 실학유산에 대한 연구-실학자들의 군사개혁론을 중심으로-』, 『역사과학』 100, 1981' 등을 들 수 있다.

12) 주제를 중심으로 실학자의 중앙군제 개혁론을 살펴본 연구로는 趙珣, 『朝鮮後期 實學者의 軍制改革論』, 『東洋學』 18, 단국대학교 동양학 연구소, 1988; 姜萬吉, 『軍役改革論을 통해서 본 實學의 성격』, 『東方學志』 22, 1979; 申大鎮, 『朝鮮後期 實學者의 國防思想

적지만, 실학자 개혁론의 특성은 물론이고 중세사회가 해체되고 근대사회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위치한 실학의 진보성과 보수성·한계성을 파악하는 것 등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실학자의 중앙군제 개혁론을 독립된 하나의 논문으로 하여, 핵심 개혁안을 실학자와 非實學者는 물론이고 실학자 상호 간에 비교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이에 본고에서는 실학자의 중앙군제 개혁론에 대해 오위제 복구론과 오군영 감축론을 중심으로 실학자와 정부 지배층 및 실학자 상호 간에 어떠한 유사성과 차별성이 있는 가를 상호 비교하려 한다. 그럼으로써 조선후기 중앙군제의 변동과 모순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그를 통해 조선후기의 시대적 성격 및 중세사회가 해체되고 근대사회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존재하였던 실학의 역사적 성격을 파악해보려 한다.

2. 五衛制 復舊論

임진왜란 이후 창설된 조선후기 중앙의 新 軍制는 국가의 재정부담을 증대시키고, 軍多民少로 인한 良役의 폐단을 심화시켰지만 병자호란에서 후금의 침략을 격퇴하지 못하였다. 아울러 조선후기 군영은 각 당파의 군사적 기반의 모습을 띠고 있었고, 18세기 이후 평화의 시대가 전개되자 국가는 자연재해는 물론이고 국가의 재정수입을 확충하기 위해 上番을 자주 정지하는 등의 문제점도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와 식자층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중앙군제 개혁론을 제기하였는데, 실학자의 오위제 복구론도 그러한 개혁론의 하나였다. 여기에서는 17세기 반계 유형원과 18세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金駿錫, 「조선후기 國防意識의 전환과 都城防衛策」, 『典農史學』 2, 1996; 朴成壽, 「朝鮮後期 實學의 國防論 -宋奎斌과 丁若鏞을 中心으로-」, 『道山學報』 5(대전), 1996 등을 들 수 있다.

기 실학자의 오위제 복구론을 통해 조선후기 중앙군제에 대한 이해 및 실학의 특성을 파악해보려 한다.

(1) 17세기 磻溪의 五衛制 復舊論

17세기의 대표적 실학자인 반계 유형원(1622~1673)은 병자호란을 직접 경험하였고, 북벌을 표방한 군사력 강화가 추진되던 효종대 및 재정적 부담이 큰 훈련도감의 감축론이 제기되었다가 오히려 훈련별대의 창설로 군액이 증가하였던 현종대까지 생존하였다. 때문에 반계는 자신의 경험과 역사적 상황 등을 토대로 兩亂 후 전면적인 國家再造方略을 담은 『磻溪隨錄』을 1652년(효종 3년)부터 1670(현종 11년)까지 전라도 부안의 우반동에서 저술하였는데,¹³⁾ 군사제도에 관한 내용은 『磻溪隨錄』의 兵制와 田制 등에 수록되어 있다.

반계는 17세기 군사제도의 문제점은 兵農分離로 인한 군인 생활의 불안정과 군역의 기피 그리고 新·舊 軍制의 중첩으로 인한 軍多民少와 放番收布로 인한 군포의 폐단으로 보았다.¹⁴⁾ 아울러 임진왜란 이후에 중앙에 창설된 신 군제는 1627년 및 1636년 청나라의 거듭된 침입을 막아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군영들은 각 당파의 군사적 기반의 성격이 짙으므로 국왕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군제를 개혁할 필요성도 있었다.¹⁵⁾ 따라서 반계는 그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중앙군제 개혁론을 제기하였는데, 오위제 복구론이 바로 그것이다.

13) 천관우, 「반계유형원 연구 疑補」, 『근세조선사연구』, 일조각, 1979, 338쪽.

14) 서태원, 「壬辰倭亂 및 孝宗의 北伐論이 內政에 끼친 영향-磻溪 柳馨遠의 軍役制 改革論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80, 1998.

15) 김준석, 「柳馨遠의 政治·國防體制 改革論」, 『東方學志』 77·78·79합집, 1993, 396-396쪽.

1) 군인에 대한 토지 지급론

반계는 五衛 제도의 개혁을 논의하면서, ‘兵農이 분리된 후 온갖 해독이 극도에 달하였고, 唐의 府兵 제도가 井田法이 시행되었던 三代 이후에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것은 토지를 지급해주고 병역을 부과시킨 데에 있지 부를 설치하고 위를 예속시킨 데에 있지 않다¹⁶⁾’며 군인에 대한 토지지급을 강조하였다. 반계가 토지와 관련하여 군제의 모순을 시정하려 한 것은 토지는 국가의 근본이므로 토지제도를 바로 잡으면 온갖 일이 옳게 되지만, 토지제도가 문란해지면 賦稅·出役·戶口·軍隊 등 온갖 일이 하나도 마땅함을 얻을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¹⁷⁾ 실제로 군인에게 토지를 지급해주는 제도가 붕괴된 후 面이나 郡을 기준으로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을 함께 편성함으로써, 단결도 안되고 군역도 기피하는 폐단이 발생하였으므로 기병·보병·속오군 등의 군인에게 토지를 지급하여 里단위로 편성하자고 하였다.¹⁸⁾ 그리하여 반계는 구체적으로 군역 담당자에 대한 토지지급 및 군인을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보인의 의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기병과 보병은 4頃에서 1사람의 군사를 내고, 보병은 번상을 하나 기병은 말만 준비하고 번상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모두 1경을 받는데, 4경내에서 한 사람이 군인이 되면 나머지 세 사람이 保夫가 된다. 보부 한 사람은 각각 해마다 米 12두를 내거나 혹은 布 2필을 내어 군인을 도와준다. 보병은 8교대로 번상하는데 한 보인의 쌀을 모아 두었다가 1달의 급료로 6두를

16) 柳馨遠, 『磻溪隨錄』 卷 21, 五衛及諸衛條. “至於兵農爲二之後 則百害俱極 尤無足論 此唐之兵制 在後世爲最善也 然其所以善者 在給田正兵而不在於置府隸衛也”.

17) 柳馨遠, 『磻溪隨錄』 卷 1, 田制 上, 分田定稅節目. “若不正田制 則民產終不可恒 賦役終不可均 戶口從不可明 軍伍從不可整 …… 土地天下之大本也 大本而舉 則百度從而無一不得其當 大本其紊 則百度從而無一不實其當”.

18) 柳馨遠, 『磻溪隨錄』 卷 21, 兵制, 諸色軍士條; 自田制廢壞 後世兵制 只收括人丁 隨得充代 是以一邑則東面之人 與西面人 間雜爲編 一道則南軍之人 與北軍人 間雜爲編 雖曰同隊 同伍而形勢不相維 面目不相熟 情意不相孚 奔亡者匿其跡 遷徙者容其奸 勢固然矣 平居軍制已紊 緩急尙何所恃 縱有善者 亦無如之何矣 田制旣行則旗步東伍軍 皆各以里次 編成隊伍.

준다. 기병은 自費로 戰馬를 마련하므로 번상하지 않고 本地에서 연습하며, 매월 2번 試射하고 春秋에는 습진한다. 外居하는 공사전이 토지를 받으면 속오군이 되는데, 2경에서 한 사람이 군인이 되고 지금의 예와 같이 번상하지 않고 본지에서 연습하게 하였다. …… 수군도 기병과 보병의 예와 같이 매 4경마다 1인의 군사를 낸다.¹⁹⁾

는 것이었다. 이것은 군인과 保에게 균등하게 一頃의 토지를 분배해 주어 군역 담당자에게 생활의 기반을 마련해 주고, 保로 하여금 1년에 米 12斗 혹은 布 2疋로써 군인을 경제적으로 돕게 한 것이다. 여기서 기병은 서울 훈련도감에 砲手와 馬隊가 있으므로 番上하지 않았고, 지방의 경우에도 평안도와 함경도의 국경지대를 제외한 남쪽 지방의 경우에는 留防을 하지 않고 本地에서 훈련하다가 유사시에 동원함으로서 먼 곳을 왕래하는 데에 따른 군사의 피로와 말을 먹이고 관리하는 부담을 줄여주려 하였다. 아울러 조선전기 오위에 속했던 감사·팽배·대졸 및 족친위·충찬위 등은 혁파하고 충의위와 충순위는 하나로 통합²⁰⁾되었다는 점에서, 반계가 구상한 오위에서 중앙군의 핵심 역할을 하는 군대는 正兵의 하나인 步兵이었다. 보병은 8교대로 番上하여 2개월씩 서울에 머물렀으며, 보병에게는 3사람의 보부가 제공되었는데 그 중 2사람은 번상에 소요되는 경비를 그리고 1사람은 매달 군사의 급료로 米 6두를 제공하게 하였다. 따라서 보병에게 토지가 지급되고, 1명의 보가 추가되어 3명의 보를 주었다는 점에서 조선전기²¹⁾에 비해 조선후기 보병의 대우는 크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사실

19) 柳馨遠, 『礪溪隨錄』 卷 1, 田制 上; 騎步兵 皆四頃出一人 步兵番上 騎兵備馬不番上 凡民皆受一頃 四頃夫內一人爲主 則三人爲保夫 保夫每一人 歲出米十二斗 或二疋以助之 步兵八運番上 除一保收米 入番時月給料六斗 騎兵 自費戰馬 不番上 本地鍊習 每月兩度試射 春秋習陣 若公私賤外居受田者 爲束伍軍 二頃出一人 二頃出一人 亦不番上 而本地鍊習 如今例...水軍依騎步兵 每四頃出一人.

20) 『經國大典』 卷 4, 兵典, 番次部目; 『礪溪隨錄』 卷 21, 兵制, 諸色軍士條; 『礪溪隨錄』 卷 21, 兵制, 五衛及諸衛條.

21) 『經國大典』 卷 4, 兵典, 給保條 保병에게는 1保 즉 장정 2명이 보로 제공되었다.

은 반계가 번상하는 보병의 경우에도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의 군인은 해당 병영과 邊鎮에 번을 서도록 함으로서 먼 거리를 왕래하는 데에서 야기되는 고통을 없애주려 했다는 점에서도 잘 나타난다.²²⁾

따라서 이렇게 오위 군인에게 군 복무의 대가로 토지를 제공하는 반계의 병농일치론은 給保에만 의존했던 15세기의 군역제도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며, 국가의 근본인 토지제도의 개혁을 고려하지 않고 고안된 호포제에 비해 본질적인 개혁이었다.²³⁾ 아울러 당시 군역의 최대 담당층이었던 농민의 입장에 서서 농민에게 삶의 토대가 되는 토지제도를 개혁하여 군역제의 모순을 개혁하려 했다는 점에서, 정부지배층이 추진한 閑丁收括策에 비해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혁론이었다.²⁴⁾ 물론 반계의 병농일치론은 경지에 따라 군역이 부과됨으로써,²⁵⁾ 국가가 군역자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역을 방지하고 이웃이나 친척과 함께 편성시켜 전투에서의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²⁶⁾ 한편 군인에 대한 토지지급을 전제로 한 군제개혁 즉 병농일치론은 18·19세기의 실학자에게서도 나타난다. 즉 18세기 성호 이익과 농포자 정상기는 井田法을 활용하여 군인에게 토지를 지급하고 군대편성을 하여 군

22) 柳馨遠, 『磻溪隱錄』 卷 21, 兵制, 五衛及諸衛條. “京師番上之兵 分隸五衛 而各有原定 其遠京處 則定審於各兵營及邊鎮”; 아울러 반계는 훈련도감 군인을 지방인으로 보충하여 부모를 이별하고 농토를 버린 채 서울로 올라오는 등의 폐단을 제거하기 위해 서울이나 서울 근처 사람으로 도감의 군사를 충원하게 하였고(『磻溪隱錄』 卷 21, 兵制, 訓練都監條. “兵制砲手馬隊 皆依今例 但不以外方居民充上 以京近人募定”), 금오위의 군대편성도 마찬가지로 하는 점(『磻溪隱錄』 卷 21, 兵制, 五衛及諸衛條. “金吾軍士 以京府及近京邑劃定”) 등에서 중앙군을 가급적 서울이나 서울 근처의 사람들로 충원함으로써 조선전기 番上의 문제점을 시정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3) 姜萬吉, 「軍役改革論을 통해서 본 實學의 성격」, 『東方學志』 22, 1979, 159-160쪽, 趙珖, 「朝鮮後期 實學者의 軍制改革論」, 『東洋學』 18, 단국대학교 동양학 연구소, 1988, 508쪽.

24) 서태원, 앞의 논문, 『國史館論叢』 80, 1998, 276쪽.

25) 柳馨遠, 『磻溪隱錄』 卷 21, 兵制, 諸色軍士. “凡出丁定軍以田 一夫受田百畝 百畝爲一頃 四頃爲一佃 …… 軍士逃故則繼受其田者代之 或其保中推一人爲主戶 而代受者充爲保 已見田制”.

26) 尹用出, 「柳馨遠의 役制改革論」, 『韓國文化研究』 6, 1993.

정충원 및 군역의 불균형 문제 등을 시정하려 하였으며,²⁷⁾ 19세기 다산도 閔田論과 井田論을 통해 병농일치론을 주장하였다.²⁸⁾

하지만 오위 군인에 대한 토지지급을 위해서는 토지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토지를 많이 소유한 양반계급이 권력을 장악한 상황에서 토지개혁은 실현되기 어려웠다. 따라서 병농일치제의 토대가 되는 公田制의 실현도 국왕이 과단성 있게 시행하면 가능하다고 본 것은, 역사발전에 대한 반계의 관념론적 이해를 잘 보여준다.²⁹⁾ 아울러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훈련도감을 인정하기는 하였지만, 직업군인 또는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군복무를 하는 제도가 아니라 병농일치를 통해 조선전기 오위제를 복구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반계의 병농일치론에서 복고적인 성격이 엿보인다.³⁰⁾

2) 일반 양민 중심의 편성론

반계는 일반 양민으로 구성된 歩兵을 중심으로 오위를 운영하려 하였다. 따라서 반계의 방안에 따르면 훈련도감의 砲手와 馬隊 및 오위의 보병이 중앙군의 핵심 군대로 활용된다. 하지만 양반으로 구성된 甲士(14,800명)³¹⁾ 및 忠贊衛·族親衛 등을 혁파하고 忠義衛와 忠順衛는 하나로 통합³²⁾한 다음, 보병을 중심으로 오위를 운영하려 한 점은 반계의 오위복구

27) 趙楨基, 「星湖의 軍政論」, 『論文集』 6-2, 마산대, 1984, 123-127쪽; 趙楨基, 「農圃子 鄭尙驥의 國防論」, 『釜山史學』 7, 1983, 108-110쪽.

28) 정성철, 『실학파의 철학사상과 사회정치적 견해』, 사회과학출판사, 1974(정성철, 『실학파의 철학사상과 사회정치적 견해』, 최필승 편, 한마당, 1989, 480쪽); 金容燮, 『增補版 韓國近代農業史研究』 上, 일조각, 1984, 106쪽; 趙楨基, 「茶山の 軍政論」, 『論文集』 9-2, 창원대, 1987, 49쪽; 강만길, 앞의 글, 1979, 166쪽; 趙誠乙, 「丁若鏞의 軍事制度 改革論」, 『京畿史學』 2, 1998, 154-158쪽.

29) 정성철, 앞의 책, 1989, 134쪽.

30) 서태원, 앞의 글, 1998, 269쪽.

31) 柳馨遠, 『磻溪隨錄』 卷 21, 兵制, 諸色軍士條.

32) 柳馨遠, 『磻溪隨錄』 卷 21, 兵制, 五衛及諸衛條; 忠義衛忠順衛 合爲一司 修定規例 …… 此外與忠贊衛族親衛定虜衛等各色 悉罷之.

론이 국민개병제의 원칙에 크게 미흡하였다고 여겨진다. 그 점은 동시대에 살았던 山林 草廬 李惟泰(1607~1680)의 오위 복구론과 비교하면 잘 알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반드시 五衛法을 복구하여 고금의 마땅함을 참작하여야 합니다. 모든 백성들은 귀천을 막론하고 塾學에 들어간 다음 15세에 학교로 올려 보내고, 나머지는 모두 오위에 속하게 합니다. 오위에 소속된 사람 중 무예에 능한 자를 뽑아 上番하게 하고, 무예에 능하지 않는 자에게는 관에서 2필을 거두어 軍資別倉에 수송하여 상번군의 稍食으로 사용하게 합니다.…… 속오군을 폐지하지 말고 恒營의 座目을 조사하여 15세 이상의 公賤과 私賤의 武才를 시험한 후 능한 자는 속오군에 充定되되 사천으로서 주인의 本家에서 부리는 사람은 충정하지 말고, 공천으로 무예가 재주가 없는 사람에게 규정대로 포를 거둬오므로서 속오군 각자는 軍資倉으로부터 적당량의 포를 받아 생활하게 합니다. 武才가 뛰어난 경우 공천은 면천시킨 다음 그리고 사천은 본 주인에게 보상해준 다음 면천하여 五衛에 충정하는데, 稍食은 軍資倉에서 지급합니다. 이외의 여러 군병은 모두 혁파해야 합니다.³³⁾

즉 초려는 조선초기의 오위법을 회복하여 公卿부터 庶人의 자식에 이르기까지 15세때 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사람은 모두 오위에 예속시켜, 무예가 능한 사람은 上番의 임무를 담당하고 그렇지 못하면 군포 2필을 내게 하여 상번한 군인의 稍食(祿米)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일반민은 물론이고 양반도 오위에 편성하여 군역의 임무를 담당시키려 하였음을 알 수 있

33) 『顯宗改修實錄』 卷 3, 元年 5월 癸亥, 37책 170쪽; 必也修復五衛之法 參酌古今之宜 凡民勿論貴賤 皆入塾學 十五選升于學校 其餘皆屬於五衛 五衛之人 必試取武藝之能者 而其不能者 自官收布二匹 輸于軍資別倉 以爲上番軍稍食之用 …… 且今束伍不可廢也 臣意以爲 考其鄉約廳座目 公私賤十五以上 試取武才 能者皆充定 而私賤則本主家內使喚者 勿充 公賤無才者則收布如規 束伍每人 以軍資倉布 量宜定給 以爲資 其中最有才者 公賤則免賤 私賤則以價給本主 亦使免賤 以充五衛 所食出於別倉 此外諸色軍兵之號 皆可革罷也; 『承政院日記』 162冊, 顯宗 元年 5월 9일; 『草廬全集』 卷 3, 己亥封事.

다. 더욱이 초려는 15세 이상의 천민 중 주인의 본가에서 부림을 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속오군에 편성시킨 후 武才를 시험하여 능한 사람은 속오군으로 삼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규정대로 포를 납부하게 하였고, 武才가 뛰어난 경우 공천은 면천시키고 사천은 본 주인에게 奴의 가격을 배상해준 다음 면천하여 오위에 충정하게 하였다. 따라서 비록 반계도 공천과 사천을 속오군에 편성시키도록 하였지만,³⁴⁾ 초려는 일반민은 물론이고 양반 및 武才가 뛰어난 천민까지도 면천시켜 오위군으로 활용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반계의 오위 복구론에 비해 초려의 방안이 국민개병제적 성격이 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반계의 오위군 편성이 국민개병적 성격이 약한 것은, 관료 중에서 良役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군역을 담당하지 않는 계층 특히 양반에게도 호포를 징수하여 軍多民少의 모순을 시정하려 했던 호포론³⁵⁾과 비교해도 잘 알 수 있다. 실제로 반계와 동시대에 살았던 병조참지 兪榮(1607~1664)도

신이 시골에 있을 때 군병이 布의 징수로 인해 곤란함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한 집에서 4~5인이 응하는 경우도 있어 근심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그치지 않으니 반드시 변통해야 합니다…… 祖宗朝에는 諸衛에 士族이 편성되었는데 요즈음은 그렇지 않으니 군적을 고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행하면 어지럽고 시끄러운 폐단이 있으니 군병 중에 도망하거나 사망한 사람 및 老弱者를 군적에서 말끔히 지워버려 그들에게는 收布하지 말고, 사족들에게 포를 거두어서 도망자와 사망자 및 老弱者 數의 포를 보충하면 군역은 자연스럽게 가벼워지고 國用도 전에 비

34) 柳馨遠, 『磻溪隨錄』 卷 21, 兵制, 諸色軍士條: 束伍軍 以公私賤出 定給保一夫 但令本地 鍊習 不爲入番 凡入束伍者 公賤則依今例全減身貢 私賤亦令減其一疋 保夫同.

35) 정만조, 「朝鮮後期の 良役變通論議에 對한 檢討 -均役法 成立의 背景-, 『동덕여대논문집』 7, 1977, 14-20쪽; 김용섭, 「朝鮮後期の 賦稅制度釐正策」, 『중보관 한국근대농업사 연구』 상, 1984, 252-297쪽; 지두환, 「조선후기 戶布制 論議」, 『한국사론』 19, 1988; 오영교, 「17세기 지방제도 개혁론의 전개」, 『동방학지』 77·78·79, 1993, 421-444쪽.

해 줄어드는 염려가 없어질 것입니다.³⁶⁾

라고 지적하면서 조선 전기 오위에서 사족이 군역을 담당할 것을 근거로, 후기에 군역을 담당하지 않은 사족에게 수포하여 도망자나 사망자의 군역을 일반 군병이나 노약자에게 부담시키는 군역의 폐단을 시정하자고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반계가 토지를 받은 士族 이상의 양반층이 군역을 담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³⁷⁾ 반계의 병농일치론에서 보이는 보수적 측면이라고 여겨진다.³⁸⁾ 그것은 士族에게 병역의무를 부담시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국가에서 사를 양성하는 것은 인민을 위해서이고, 귀천의 구별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나뉘어진다. 따라서 사를 양성하는 것이 군대를 양성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이 어찌 도리에 맞겠는가.³⁹⁾

라고 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반계는 군역부담에서의 신분적 차등을 철저히 극복하지는 못했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반계는 사족을 군역에서 제외시키고 일반 양인을 正軍에 그리고 천민을 東伍軍에 편성시키려 하였는데, 이러한 특징은 18세기의 성호에게서도 나타난다. 즉 성호는 숙위하는 親兵

36) 『孝宗實錄』 卷 21, 10년 2월 己巳, 36책, 173쪽; 兵曹參知俞啓曰 臣在鄉時 目見軍兵困於收布 一家之內至於四五人應役 愁怨之聲 處處不已 不可不變通…… 祖宗朝 諸衛皆是士族 而今則不然 不可不改紀軍籍 而但卒然行之 必有紛紜之弊 軍兵中逃故老弱 並皆蕩滌勿論 仍收布於士族 以充逃故老弱之數 則軍役自歇 而國用亦無比前減縮之患矣.

37) 趙珖, 「實學者의 國防意識」, 『韓國史論』 9(朝鮮後期 國防體制의 諸問題), 국사편찬위원회, 1981, 278쪽; 한편 반계가 토지를 주면서도 군대에 편성시키지 않은 경우는 士를 비롯하여 大夫·諸選·世嫡有親·有蔭 및 吏胥·徒隸 등 職役이 있는 사람들이었다(柳馨遠, 『磻溪隱錄』 卷 21, 兵制, 諸色軍士. “凡出丁定軍以田 一夫受田百畝 百畝爲一頃 四頃爲一佃 除大夫·士·諸選·世嫡有親·有蔭及吏胥·徒隸 凡有職役者外”).

38) 서태원, 앞의 글, 1998, 269쪽.

39) 柳馨遠, 『磻溪隱錄』 卷 1, 田制 上, 分田定稅節目. “夫國之養士 莫非爲民 故勞心勞力 貴賤之職攸分 養士而不加養軍 則豈是道理”.

이외에 잡다한 명목의 군대를 모두 혁파하여 어영군으로 하되 私賤과 良丁을 가리지 않고 충정하자고 하였지만,⁴⁰⁾ 높은 관리·양반의 자식에게 병역 의무를 지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한 것에서 양반계급적 입장이 잘 드러난다.⁴¹⁾

따라서 반계가 일반 양민을 중심으로 오위를 편성한 것은 동시대에 살았던 山林 草廬 李惟泰의 오위 복구론이나 정부 관료였던 유계의 호포론 등과 비교할 때 국민개병제적 성격이 약하다. 비록 軍多民少나 재정상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양반에 대한 군역부과를 모색하지 않은 것은 반계의 오위 편성론에서 엿보이는 양반 계급적 한계라고 여겨진다.

3) 지휘체계 개혁론

조선전기 중앙 오위의 지휘체계는

都總管(大將)---衛將---部將---(統將)---旅帥---隊正---伍長---卒⁴²⁾

로 되어 있었다. 즉 大將(都總管)은 정2품으로서 五衛의 최고 지휘관이며, 衛將은 종2품으로서 5부를, 部將은 종6품으로 4통을, 旅帥는 5대를, 隊正은 5伍를, 伍長은 5卒을 지휘하였다.⁴³⁾ 오위의 병력은 統의 규모에 따라 달라

40) 李漢, 『藿憂錄』, 兵制(이익성 옮김, 『李漢 藿憂錄』, 한길사, 1992, 55쪽); 韓祐勳, 『星湖 李漢研究』, 서울대출판부, 1980, 205쪽.

41) 李漢, 『星湖先生文集』 卷 30, 論兵制; 今若卿士子弟 而並編行伍 恐不妥當; 『星湖先生文集』 卷 46, 雜著, 論兵制; 정성철, 앞의 책, 1989, 233쪽; 조광, 『實學者의 國防意識』, 『韓國史論』 9, 1981, 278쪽; 朴原出, 『星湖 李漢의 軍役變通論』, 『釜山史學』 22, 1998, 300쪽.

42) 『增補文獻備考(中)』 卷 116, 兵考 8, 衛兵(고진간행회, 『增補文獻備考(中)』, 동국문화사 영인본, 375쪽). “大將令衛將 衛將令部將 部將令統將 統將令旅帥 旅帥令隊正 隊正令伍長 伍長令其卒”; 千寬宇, 『朝鮮初期 五衛의 形成 一五衛考 第1部-』, 『近世朝鮮史研究』, 일조각, 1979, 84쪽.

지는데, ‘統을 1개 隊의 규모로 하면 오위의 병력은 2,500명이며(僕從과 百執 등은 제외한 숫자), 여기에 정규군의 10분의 3은 遊軍이 되므로 1,071명을 더하면 총 3,571명이 된다. 반면 1개 旅를 統의 규모로 하면 오위의 병력은 12,500명이며, 여기에 遊軍 3,571명을 더하면 총 17,856명’이었다.⁴⁴⁾

반계는 이러한 오위의 지휘체계 중 도총관 및 12명으로 구성된 오위장의 지휘권을 개혁하려 하였다.

먼저 반계의 시대에는 이미 오위가 붕괴하여 오위의 군무를 담당하던 도총부가 『經國大典』 당시와 달리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때문에 반계는 오위를 수정해서 책임을 맡을 관리를 선발한 후 군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게 하되, 도총부를 혁파하여 여러 위를 병조가 직접 총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도총부의 구성원으로서 오위의 최고 지휘관인 도총관은 지휘체계에서 탈락되고, 오위가 직접 병조에 연결되는 변화를 갖게 되었다.⁴⁵⁾ 이렇게 오위를 복구하여 국왕 직속의 지휘체계로 정비한 것은 각 당파의 군사적 기반과 관련있는 조선 후기 여러 군영에 비해, 公兵의 기능을 강화하고 왕권을 보장하는 측면이 있다.⁴⁶⁾ 한편 정부가 1754년(영조 30) 「兵曹變通節目」을 제정하여 금위대장을 임명하고 병조판서는 禁軍만을 통솔하되 각 군문을 일원적으로 통제하도록 한 것이나, 정조대 華城에서 시도한 오위체제는 국왕---병조판서로 이어지는 일원적인 軍權을 확보하여 왕권 강화에 기여하였다.⁴⁷⁾

다음으로 반계는 오위장에게 지휘부대를 고정하지 않아 야기된 군정의

43) 오위 지휘관의 품계는 『經國大典』 권 4, 兵典, 京官職條에 수록되어 있다.

44) 『萬機要覽』 軍政編, 衛制.

45) 柳馨遠, 『磻溪隱錄』 卷 21, 兵制, 五衛及諸衛條. “京中五衛 修正其制 擇其任官 使實總軍務…… 又今都摠府之說 亦非古法 罷都摠府 令諸衛直總於兵曹爲當”.

46) 金駿錫, 앞의 논문, 1993, 396-396쪽.

47) 盧永九, 「正祖代 五衛體制 復舊 시도와 華城 방어체제의 개편」, 『震檀學報』 93, 2002, 332쪽 및 346쪽.

폐단을 각 위에 대한 통솔주체를 돕으로서 해결하려 하였는데,⁴⁸⁾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도 오위를 설치하고 위장 12인을 두어 오위장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임무를 정하여 謀衛將으로 삼지 않고, 매번 궐내에 入直하기 위해 들어가면 그제서야 지정된 장소가 결정되나 3일이면 다시 변경된다. 심지어 監門巡衛에 이르러서도 군사와 장군도 모두 정해지지 않다가, 병조가 일률적으로 그 날 저녁에 추천하여 임명하였다가 며칠만에 교체된다. 무예를 연습하고 진법을 익힐 때에도 책임을 맡은 本將이 정해져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장수 중에서 落點하여 행할 뿐이다. 때문에 군사행정은 원칙이 없고 온갖 문란이 발생하여 그 폐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군대가 5개의 위로 나뉘어져 있고 상변군은 2달만에 교체되는 것은, 동일한 衛가 전적으로 주관하거나 동일한 군병이 오랫동안 근무하는 것보다 낫다. 또 모든 일은 오위장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세세한 일까지 임금의 재기를 받아 행한다면, 어찌 오위장의 권한이 커져 제어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겠는가? 반드시 오위로 하여금 각각의 장수에게 일정한 책임을 맡겨야만 軍政이 바로 잡힐 것이다.⁴⁹⁾

즉 반계는 오위장이 휘하 병력을 활용하여 政變을 일으키거나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위장이 지휘할 위를 확정하지 않고 임시로 지휘할 장수를 선정한 후 곧 교체함으로써 入直·監門宿衛·訓練 등에서 軍政

48) 柳馨遠, 『磻溪隨錄』 卷 15, 職官之制 上, 京官職條; 宋正炫, 「實學派의 軍制改革案에 대하여 -磻溪隨錄을 중심으로-」, 『湖南文化研究』 5, 1973, 54쪽; 김준석, 앞의 글, 394-395쪽.

49) 柳馨遠, 『磻溪隨錄』 卷 21, 兵制, 五衛及諸衛條. “按本朝雖有五衛之說 衛將十二員 通號五衛將 而未嘗定仕爲某衛將 每至入直闕內 受點定所 三日而使 以至監門巡衛 皆無定軍 亦無定將 兵曹率皆臨夕望差 數日輒更 鍊藝習陣 亦不必本將主之 諸將中落點而爲之 是以 軍政無奇 百爲紊亂 其弊有不可勝言者…… 而況主兵 旣分五衛 番軍兩月遞代 則非如一衛專主一兵長從之比 且凡事爲皆無自專 稟旨而行 則其謹微也亦至矣 有何權重難馭之慮乎 必使五衛各定其將 各任其職 然後軍政乃可得以理也”.

은 원칙이 없고 온갖 폐단이 발생하였다고 보았다. 때문에 반계는 오위가 5개의 위로 나뉘어져 있고 상변군은 2달만에 교체되어 동일한 위장이 계속해서 군병을 지휘하거나 동일한 군병이 오랫동안 복무하는 것이 아니며, 오위장이 전횡하지 못하게 하고 세세한 일까지 임금의 재가를 받아 처리하게 하면 국가가 오위장의 세력을 능히 통제할 수 있으므로 오위장에게 지휘할 위를 확정시킴으로서 군정의 폐단을 바로 잡자고 하였다. 아울러 반계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번상이 어려운 지방군을 오위에서 제외시키고, 대체로 경기도 및 서울의 군인으로 오위를 구성하되 그들의 소속을 고정시켜 기강을 확립하고 통솔력을 높이려 하였다.⁵⁰⁾ 한편 반계와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남인계 관료 윤희(1617~1680)는 조선초기 오위는 명확한 지휘체계 없이 각각 다른 병종들이 5위에 분속된 형태였으므로 옛날 郎衛 제도를 활용하여, 양반과 서얼은 물론이고 특이한 재주와 글을 올리는 것이 가능한 자를 도총부에 편성시켜 숙위와 순검의 임무를 맡기되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摠府郎-郎僚-兵卒’ 이어지는 지휘체계를 수립하면 오위제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우수한 인재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⁵¹⁾

이상에서 보았듯이 우선 반계의 오위복구론 군인에게 토지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給保에만 의존했던 조선전기의 군사제도에 비해 군인의 처우를 크게 개선하려 한 진보적인 견해이다. 이러한 병농일치론은 18세기의 성호나 19세기의 다산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실학자의 군제개혁론의 특징이며, 국가의 근본인 토지제도의 개혁을 통해 군포의 폐단 등 군역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정부의 한정수괄책이나 지배층 일각에서 제시된 호포론에 비해 종합적이고 본질적인 개혁론이었다. 아울러 거주지를 중심으로 리에 따라 군역을 부과하므로 병역의 기피를 방지하면서 효과적으로 군역자원을 파악할 수 있고, 이웃이나 친척이 함께 대오에 편성됨으로써 전투에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이점이 있었다. 하지만 토지개혁이

50) 柳馨遠, 『磻溪隱錄』 卷 21, 兵制, 五衛及諸衛條.

51) 金鍾洙, 앞의 책, 2003, 326-327쪽.

선행되어야만 오위 군인에 대한 토지지급이 실시될 수 있었으나 당시 상황으로는 토지개혁의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직업군인이나 장기복무하는 군인에 비해서 농민이 군인을 겸함으로서 야기되는 문제점 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양민중심의 오위군 편성은 양반들은 토지를 받으면서도 군역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양반에게도 군역부담을 하려했던 호포론이나 조선전기 오위제에 비해 반계의 보수적인 측면이 엿보이며, 이러한 면은 18세기의 성호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반계의 오위 군인에 대한 토지지급론과 일반 양민중심의 군인편성론에서는 진보적·애민적 측면은 물론이고 양반계급적 한계와 보수적인 측면 등이 함께 엿보인다고 여겨진다. 한편 반계는 오위의 지휘체계와 관련하여 허구화된 도총부를 대신하여 오위를 병조에 직접 연결시킴으로서 조선후기의 군영에 비해 公兵의 기능 및 왕권을 강화하려 하였는데 정조대 華城에서 시도된 오위체제는 후금과의 전투에 패한 후 기병중심의 오위진법과 오위체제를 복구하자는 정부 관료들의 견해 및 왕권 강화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다. 아울러 오위장이 군사력을 바탕으로 정변 등에 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시로 지휘하는 위를 교체하는 데에서 야기된 군정의 폐단을, 오위장이 지휘하는 위를 확정함으로써 시정하려 하였다.

(2) 18세기 실학자의 五衛制 復舊論

18세기 실학자들은 성호를 제외하고는 오위의 제도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지만, 반계처럼 오위를 복구하여 중앙군의 핵심군대로 활용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먼저 성호 이익(1682~1764)은 반계와 달리 오위제에 대해 멀리 떨어진 지방의 후미진 곳을 중앙의 해당 위에서 통솔한 것은 실책이며,⁵²⁾ 오위제

52) 한우근, 앞의 책, 1980, 200쪽.

는 사족에게도 군역을 부과⁵³⁾하였으므로 반대하였다. 즉 오위를 마땅히 복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宗姓과 士族을 군대에 몰아 넣어 문을 늦추고 무를 급하게 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⁵⁴⁾

다음으로 農圃子 鄭尙驥(1678~1752)는 병농일치에 가까웠던 오위가 무너진 후 훈련도감을 비롯한 4~5군영이 설치됨으로서 군제의 폐단이 야기되지만, 오위는 복구할 수 없고 오군영은 설치된 지 오래이므로 하루 아침에 혁파하면 군인들이 도둑이 되거나 宿衛 및 禁旅가 허술해질 염려가 있다고 보았다.⁵⁵⁾ 이에 농포자는 현재의 여러 군영과 오위를 하나로 합한 군영을 창설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려 하였는데, 禁衛가 바로 그것이다.⁵⁶⁾ 왜냐하면 금위는 훈련도감·어영청·금위영을 합한 것이고, 금위의 左廂에는 ‘武辨의 자제·중인·서열·禁軍·別抄·호위군관’을 그리고 右廂에는 ‘良民과公私賤’을 편성시켜 기존의 도성 3군문에 비해 군인의 편성 대상의 폭을 확대하였고,⁵⁷⁾ 훈련도감과 달리 番上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위의 군인은, 과거 오위의 군인 가운데 서울에서 먼 경우 왕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近畿人으로 편성하려 하였다. 이렇게 중앙군을 서울이나 서울 근처의 백성으로 편성하려는 것은, 17세기 반계가 오위와 훈련도감을 병용하여 중앙군으로 활용하려 할 때의 방안과 일치한다. 한편 농포자는 倭賊을 효과적으로 격퇴하기 위해 도입된

53) 박원출, 앞의 논문, 1998, 300쪽.

54) 『星湖僿說』 卷 9, 人事門, 今人皆言五衛當復抑 或未然 且五衛之外 名目太繁 綱條易紊 越之君子軍雖若有理 管仲士鄉不可不念 今並驅宗姓士族 混歸鈴鎗却 是緩於文 而急於武也 亦須別有處置也 餘詳在藿憂錄.

55) 鄭尙驥, 『農圃問答』, 說兵制(李翼成 옮김, 『鄭尙驥 農圃問答』, 한길사, 1992, 39-42쪽).

56) 鄭尙驥, 『農圃問答』, 說兵制(李翼成 옮김, 『鄭尙驥 農圃問答』, 한길사, 1992, 42쪽); 趙楨基, 「農圃子 鄭尙驥의 國防論」, 『釜山史學』 7, 1983, 111-115쪽; 申大鎮, 「朝鮮後期 實學者의 國防思想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25-26쪽 및 95-96쪽.

57) 이러한 사실은 농포자가 5군영을 禁衛와 御營 2개의 營으로 통합한 후 3개의 廳을 추가한 데에서도 잘 나타난다. 즉 醫員·譯官·寫字官·算員·樂生·唱準·雜類·中人을 수용한 廳 및 書吏·市井輩·匠色을 수용한 廳이 바로 그것이다(鄭尙驥, 『農圃問答』, 說兵制(李翼成 옮김, 『鄭尙驥 農圃問答』, 한길사, 1992, 47-48쪽).

포수 중심의 威法(기효신서법, 절강병법)은 기병중심의 북방 오랑캐를 방어하는 데에는 단점이 있어 병자호란에서 패하였다며, 척법과는 달리 기병전술을 구사하는 오위진법을 참으로 좋은 진법으로 평가하였다.⁵⁸⁾ 하지만 농포자는 오위는 복구할 수 없으므로 척법의 진법을 적절히 응용하여 환난에 대처하려 하였다.⁵⁹⁾ 즉 한 예로 대개 10명이 1자로 벌여 방어하는 기효신서법의 放陣에서는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돌파당해도 좌우 끝 쪽에 있는 사람이 도울 수 없는 데, 10명을 2조로 나누어 서로 마주보게 하면 틈이 있는데도 돌파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 관료중에서는 광해군대 深下전투 및 병자호란에서 後金에게 패한 후, 기병중심의 오위진법과 오위체제를 복구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효종대와 영조대에 각각 편찬된 『演機新編』과 『兵將圖說』은 오위진법의 내용을 수록한 병서였다.⁶⁰⁾

龔菴 柳壽垣(1694~1755)은 중앙의 오위제와 지방의 진관체제를 복구해야만 명실공히 군사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며, 오위제의 복구를 긍정적으로 보았다. 하지만 유수원은 현실을 감안하여 오군영⁶¹⁾과 속오군⁶²⁾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중앙의 오군영에 대해서는 五營에 武師 1명을 두고 위망이 있는 2품 이상의 문신이나 병조참판과 軍務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면 軍中の 約束과 號令에 모두 조언을 들을 수 있고, 또 監紀御使 1인 두어 昇進·黜陟·功賞이 사실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는가를 조사하면 군무가 편중되는 폐단과 장수들이 군병을 괴롭히는 횡포가 근절되어 병제의 엄정함이 지금의 군문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보았다.⁶³⁾

58) 鄭尙驥, 『農圃問答』, 論陣法 築城墩(李翼成 옮김, 『鄭尙驥 農圃問答』, 한길사, 1992, 111쪽).

59) 趙楨基, 앞의 글, 1983, 122-123쪽.

60) 盧永九, 앞의 논문, 2002, 330-332쪽.

61) 柳壽垣, 『迂書』卷 9, 論軍制.

62) 柳壽垣, 『迂書』卷 9, 論束伍保甲.

63) 柳壽垣, 『迂書』卷 9, 論軍制. “京營制度何如 內復五衛之制 外復鎮管之規 非名實行職事

이상에서 보았듯이 17세기 반계와 18세기 실학자들은 오위제의 복구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았다. 17세기 반계는 오위제를 복구하려고 한 반면, 18세기 실학자들은 대체로 농포자나 농암처럼 오위제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면서도 복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았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의 진관체제 복구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것은 임진왜란 및 반계 생존시대에 설치된 신군제가 병자호란에서 별다른 역할하지 못하고 국가의 재정부담 및 양역의 폐단을 야기하자 반계는 훈련도감의 축소 및 오위제의 복구를 통해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 한 반면, 18세기 실학자들은 이미 오군영이 설치된 지 오래되어 중앙군제로 정착하였으므로 조선전기 오위제로의 급격한 변화보다는 오군영의 폐단을 시정하는 데에 중점을 둔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3. 五軍營 減縮論

朝鮮後期の 軍役은 被支配層에 대한 국가의 人身的 支配와 경제적 지배 즉 국방을 위한 役의 직접적 징발과 재정 수입의 확보를 위한 賦稅로서의 기능이라는 양 측면을 잘 보여주면서 身分制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운영되고 있었다.⁶⁴⁾ 그런데 조선후기에는 중앙에 5군영이 창설되는 등 군역이 크게 증가하였고, 신·구 군제의 중첩⁶⁵⁾ 및 각종 형태의 군역기피 등으로 인

而五營各設武師 又以文臣二品以上有望者 或以本兵貳堂 設爲協理軍務 凡軍中約束號令 皆得參聞 又說監紀御史一員 凡昇出功賞 各按文冊 據實參劾 則軍務偏重之弊 將絕擅兵之嫌 兵制嚴正 非今日軍門之比也”.

64) 김용섭, 『조선후기의 부세제도 이정책』, 『중보관 한국근대농업사연구』 상, 일조각, 1984, 202-208쪽; 백승철, 『17·18세기 군역제의 변동과 운영』, 『이제룡박사환력기념한국사학논총』, 한울, 1990, 514쪽.

65) 柳馨遠, 『반계수록』 卷 21, 兵制, 諸色軍士條; 白承哲, 『17·18 군역제의 변동과 운영』, 『李載稟博士還曆紀念 韓國史學論叢』, 한울, 1991, 515-524쪽.

하여 軍多民少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군역민의 몰락이 가중되었다. 그 결과 군사력을 크게 약화시켜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고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것 등에 문제점이 초래되었다.

이에 정부 관료와 識者層 등은 그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기하게 된다. 정부 관료중에서는 중앙군을 감축하거나 군역에서 제외된 양반 등에게 군역을 부과하는 戶布法 등을 시행하자는 주장이 있었지만, 정부는 閑丁의 수괄⁶⁶⁾·校生考講과 軍官試才⁶⁷⁾·均役法 등을 시행하여 軍多民少로 인한 良役의 폐단을 시정하려 하였다.⁶⁸⁾ 반면 실학자는 병농일치를 통한 중앙군제의 개혁 및 오군영을 감축하여 국가의 재정지출을 줄이면서, 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군역의 기피도 방지하려 하였다.

여기에서는 조선후기 군역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실학자의 오군영 감축론에 대해 17세기 반계 유형원과 18세기 실학자들의 방안을 살펴보고, 아울러 실학자의 방안과 정부지배층 방안을 비교해 봄으로서 조선후기 군역문제 및 실학의 성격에 대한 이해를 도우려 한다.

(1) 17세기 礪溪의 中央軍營 減縮論

礪溪는 임진왜란 이전에 설치된 舊 軍制가 폐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진왜란 중 일본군을 격퇴하기 위해 훈련도감이 그리고 후금과의 전쟁을

66) 『仁祖實錄』 卷 10, 3년 12월 癸巳, 34책 52-53쪽; 이광린, 「號牌考」, 『백낙준박사환갑기념국학논총』, 1955; 서태원, 앞의 책, 1999, 서태원, 122-130쪽; 오영교, 「鄉村對策과 五家作統制의 성립」, 『朝鮮後期鄉村支配政策研究』, 혜안, 2001.

67) 『宣祖實錄』 卷 190, 38년 8월 庚申, 25책 113쪽; 『仁祖實錄』 卷 14, 4년 12월 壬寅, 34책 151쪽; 『仁祖實錄』 卷 33, 14년 8월 癸酉, 34책 642쪽; 『肅宗實錄』 卷 40, 32년 12월 甲午, 40책 128-129쪽.

68) 조선후기 양역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군역법·호포법 등에 대한 연구현황과 과제에 대해서는 ‘송양섭, 「조선후기 군역제 연구현황과 과제」, 『조선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창작과 비평사, 2000’이 참고가 된다.

앞두고 총융청·수어청·어영청이 창설되고 효종대에 북벌을 위해 어영군의 확대가 이루어지는 등 잡다한 명목의 新 軍制가 설치되거나 확대됨으로써 군역의 폐단이 발생하였다고 보았다. 때문에 반계는 현존하는 군대를 대대적으로 혁파하여 군역에 비해 군역을 담당할 사람이 적기 때문에 생긴 軍多民少의 문제점을 바로 잡으려 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군사제도로 『經國大典』에 실려있는 것은 舊 軍制라고 하고, 임진왜란 이후 새롭게 첨가된 군제를 新 軍制라고 한다. 근년 이래 잡다하게 설치된 군제가 너무 많아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 이제 시기에 맞게 군제를 수립하기 위해 구 군제와 古法을 참작하여 증감하여야 한다. 신 군제 중에서 남겨두는 것은 都監京兵(즉 서울의 砲手와 馬隊) 및 속오군(공사천으로 대오에 편성된 자)뿐이고 그외 근래에 잡스럽게 설치한 어영군·정초군·신선군·별포수·별대(근래 出身이 심히 많으므로 갑자기 혁파할 수 없고 당분간 대오를 편성했다가 없어지기를 기다린다)·武學射夫·各廳募軍·各廳保奴의 무리들을 일질 혁파하자. 구 군제 중에서도 감사·팽배·대졸·파진군·반당 등을 모두 혁파하자. 따라서 구 군제와 신 군제 중에서 남겨두는 군대는 오직 기병·보병·속오군·능로군뿐이다.⁶⁹⁾

즉 반계는 신군제 중에서 서울의 훈련도감과 지방의 속오군만을 남기고 어영군·정초군 등 모두 혁파하려 하였고, 舊 軍制에서는 騎兵·步兵·水軍·能槽軍만을 존속시키고 감사(14,800)·팽배(5,000)·대졸(3,000)⁷⁰⁾ 등

69) 柳馨遠, 『磻溪隨錄』 卷 21, 兵制, 諸色軍士條. “本國兵制 在大典者 是謂舊制 壬辰倭亂以後 有所添設 謂之新制 近年以來 雜設名色尤多 殆不可悉數 今欲因時立制 宜因舊制 酌以古法 而損益之 而新制 唯存者 都監京兵(即景砲手馬隊)及束伍軍(公私賤編伍者)外 近來雜設如御營軍·精抄軍·新選軍·別砲手·別隊(近來出身甚多 難以猝罷則姑爲作隊 以待其盡)·武學·射夫·各廳牙兵·各廳募軍·各廳保奴之類 一切罷之 舊所有甲士·彭排·隊卒·罷鎮軍·伴倫等各色 亦皆罷之 所當存者 唯騎步兵·束伍軍·水軍·能槽軍”.

70) 『經國大典』 卷 4, 兵典, 番次都目條.

을 모두 혁파함으로서 軍多民少의 모순을 바로 잡아 군역민의 몰락을 시정하려 하였다. 따라서 중앙군의 경우 반계는 훈련도감만을 남기고 어영군·정초군·신선군·별포수·별대 등 모두 혁파하려 하였다. 아울러 훈련도감의 경우 以田出兵의 병농일치론과 배치되나 수도방어의 취약성 때문에 漢의 南北軍이나 唐의 南北衙처럼 존속시켰지만,⁷¹⁾ 군사의 수를 우리의 경제형편에 맞게 1~2천명 정도로 축소시키고 후대의 임금이 군역을 증가시키지 못하도록 명확한 훈시를 내리라고 하였다.⁷²⁾ 이러한 군역감축의 의지는 五衛를 복구하여 훈련도감과 함께 중앙군의 핵심으로 이용하되, 오위의 갑사(14,800)·팽배(5,000)·대줄(3,000) 등 주요 병종을 혁파시킨 채 番上보병을 중심으로 운영하려는 데에서도 잘 나타난다. 물론 훈련도감의 군역을 대폭 축소하고 오위의 복구에서 갑사를 제외시킨 것은, 국가의 경제형편을 개선시키기 위한 것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것은 반계가 생존한 시대였던 1671년(현종 12) 호조의 수입 10여 만석중 무려 7~8만석이 훈련도감 7,000여명의 양병 비용으로 들어갔고, 조선초기 京官의 녹봉 10만석중 갑사 2,000명의 녹봉으로 63,000여 석에 달한 데에서 잘 알 수 있다.⁷³⁾ 때문에 정부 관료들 간에도 효종의 승하 후 현종대를 비롯하여 숙종대에 군역축소론이 제기되었으며, 재정 부담이 컸던 훈련도감 감축이 핵심 내용이었다.⁷⁴⁾

이상에서 보았듯이 반계는 중앙군의 경우 훈련도감을 제외한 어영청·총융청·수어청 등을 혁파하려 하였고, 비록 훈련도감은 수도방어를 위한 상비군 주둔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존속시키되 군역을 크게 축소함으로서 軍

71) 김준석, 앞의 글, 1993, 395쪽.

72) 柳馨遠, 『磻溪髓錄』 卷 21, 兵制, 訓練都監條. “量其稅入 可養萬兵則定以四五千 可養五六千則定以二三千 可也 本國事力 不過養一二千 過此則有害矣 …… 人君宜酌定其數 而又明有垂訓 使後世慎勿復加可也”.

73) 김종수, 앞의 책, 2003, 105쪽 및 270-272쪽.

74) 이태진, 앞의 책, 1977, 133-153쪽; 최효식, 『조선후기 군제사연구』, 신서원, 1995, 33쪽; 김종수, 앞의 책, 269-340쪽.

多民少로 야기된 군역제의 폐단을 시정하면서 국가의 재정 부담도 경감시키려 하였다. 아울러 반계는 이렇게 혁파된 중앙군을 대신하여 복구된 오위의 番上 歩兵을 활용하려 하였고, 따라서 반계는 오위와 훈련도감을 병용하여 중앙군의 핵심군대로 활용하려 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군역감축론은 반계와 동시대인 현종대에 훈련도감 감축론을 중심으로 관료들 간에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반계가 신·구 군제의 대대적인 혁파를 주장했다 하더라도 군역감축론은 실학자들만의 고유한 개혁론은 아니었다.

(2) 18세기 실학자의 五軍營 減縮論

1682년(숙종 8) 訓練別隊와 精抄軍을 합하여 禁衛營이 창설됨으로써 중앙의 5군영 체제가 수립되었고,⁷⁵⁾ 1704년(숙종 30) 어영청과 금위영의 편제를 5部 25司 125哨로 동일하게 하여 訓練都監을 가운데로 한 兩翼體制 즉 3軍門體制를 마련하였으며 摠戎廳·守禦廳은 三營制로 통일되었다.⁷⁶⁾ 아울러 18세기에다 잡다한 명목으로 군역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軍多民少의 폐단이 더욱 심화되었다. 실제로 18세기에다 군역은 계속 늘어나 숙종 초년에 30만이었던 良軍이 1751년(영조 27) 현재 50만으로 증가하였으나, 殘戶·獨戶 72만 戶를 제외한 實戶 62만 戶중 士夫·鄉品·府史·胥徒·驛子·緇髡 등을 제외하고 良役に 응하는 호는 10여만 호에 불과하여 白骨徵布·黃口簽丁·徵族·徵鄰 등의 폐단으로 인하여 군역민의 몰락이 가중되었다.⁷⁷⁾ 때문에 良役을 변통하기 위한 대안으로 숙종대와 영조대에 정부지배층 사이에서 戶布論·結布論·口錢論·遊布論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다가, 1751년 정부는 기병·보병에게 16개월에 2필 내던 포를 12개월에 1필로 감해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移劃·魚鹽船稅·隱餘結·軍官布·結

75) 李泰鎮, 앞의 책, 1977, 133-153쪽; 金鍾洙, 앞의 책, 2003, 174-191쪽.

76) 李泰鎮, 앞의 책, 1977, 169-174쪽.

77) 『英祖實錄』 卷 75, 28년 정월 乙亥, 43책 426쪽.

미를 통해 감면해준 액수를 보충하는 均役法을 시행하게 된다.⁷⁸⁾

바로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살았던 18세기의 실학자 성호·농포자·여보 등은 17세기의 반계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군인에게 군역의 대가로 토지를 제공해주는 병농일치론을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하면서도, 군다민소로 인한 군역제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오군영을 축소하거나 군액을 감축하려는 견해도 함께 제시하였다.

먼저 성호 이익은 오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반면, 都城의 三營에 대해서는 ‘비록 병농이 분리되는 문제점이 있으나, 병란을 懲戢하는 것으로 漢의 남북군에 비유되며 그 뜻이 매우 좋다’⁷⁹⁾고 보았다. 따라서 오위를 복구하여 중앙군제를 개혁하자는 견해에는 반대하였고, 도성 三營 사이에 통솔권의 계통이 없는 것을 지적하면서 軍需用 米布를 상납하는 保 제도를 점차적으로 혁파하자고 하였다.⁸⁰⁾ 특히 성호는 保의 부담이 上番者에 비해 과중한 것이 5가지 不均 중 첫 번째로 보았는데, 그 내용은

役이 균등해야 원망이 없다. 요즈음 군졸의 名色이 너무 많아, 시골에 있는 어영과 금위의 무리들이 있다.…… 그런데 군인이 3년에 1번 上番할 때 3인의 保가 裝送하는데, 上番者는 3개월 있다가 파하여 돌아온다. 따라서 번을 서는 사람을 심히 편하고, 보내는 자의 고통이 매우 크므로 不均 중에서 첫 번째이다.⁸¹⁾

이었다. 즉 성호는 어영청·금위영 등 각종 명목의 군대로 말미암아 保의

78) 『英祖實錄』卷 75, 28년 1월 乙亥, 43책 426-427쪽.

79) 李漢, 『星湖僿說』卷 10, 人事門, 軍兵保條, “國之兵制 自五衛罷 而三營勑設於都城 訓局者 壬辰後勑設 禦營者 癸亥後勑設 皆因亂懲戢意也 比於漢之南北 其意亦好 雖咎其兵農之判, 而漢亦有親兵 其不虞誤之禍 又不可不比”.

80) 한우근, 앞의 책, 1980, 200-201쪽; 조정기, 앞의 글, 1984, 129-132쪽.

81) 李漢, 『星湖僿說』卷 7, 人事門, 五不均條, “役均而後無怨也 今之軍卒名色極夥 至於鄉兵之禦營禁衛之類 …… 其上番也 則三年一番 每三人裝送 三月而罷 番者便深 送者苦極 此一不均也”.

수가 엄청나게 증가하였고, 상번자는 3년에 1번 상번하여 3개월만에 되돌아오는 데에 비해 2명의 資保는 군장 및 번상의 비용을 그리고 1명의 官保는 급료로 제공될 米 12斗나 布 2疋을 각각 마련하느라고 고통이 너무 심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성호가 산출한 西北 二道를 제외한 六道의 훈련도감·어영청·금위영 군인 수와 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⁸²⁾

군영의 명칭 / 군인·보	軍人の 數	保의 數
훈련도감	馬·步兵 5,200명 (그 중 마병 740명)	確保·餉保 44,000여 명
어영청	標下兵·別破陣 1,800여 명 鄉正軍 16,700여 명	49,000여 명
금위영	標下馬兵 726명 鄉正軍 16,300여 명	16,300여 명
합계	40,726여 명	109,300여 명

즉 다른 군영을 제외하고 삼군영 保의 숫자만 109,300여 명에 이르고 있어, 軍多民少의 문제점이 있다. 아울러 성호는 옛날에는 田賦로서 군병을 양성하였지 보가 쌀을 납부하여 군량으로 삼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으며, 금위군과 어영군의 상번이 정지되었는데도 보에게 米布를 징수하는 것 및 군병으로 군병을 먹이는 것은 잘못된 제도라고 지적하였다. 때문에 성호는 田賦로서 군인의 衣糧을 감당하게 해도 부족할 리가 없다며 보 제도를 변혁하려 하였는데, 갑자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면 그 동안 米布의 징수를 통해 이익을 보던 세력이 싫어하여 일이 잘되지 않고 단지 소란만 일어날 것이니 시간적 여유를 갖고 조금 조금씩 保제도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하였다.

82) 李瀾, 『星湖僿說』 卷 10, 人事門, 軍兵保條; 한우근, 앞의 책, 201쪽.

다음으로 農圃子 鄭尙驥는 兵農一致의 府兵制와 비슷했던 五衛가 혁파된 다음 임진왜란 이후에 4~5군영이 창설됨으로써, 국가재정의 과도한 재정 지출이나 屯田 및 軍多民少로 인한 폐단이 야기되었다고 보았다. 즉

후세에 와서 병농이 분리되자 군제가 무너졌고, 唐의 府兵制가 三代의 뜻이 가장 많이 남았으나 오랫동안 시행되지 못해 애석하다. 우리나라 군제도 조선전기에는 五衛였으므로 옛 제도와 매우 가까웠으나, 임진왜란 이후에 임시로 군문을 설치한 이래 요즈음에는 4~5영이나 되었다. 농사짓지 않는 백성이 서울에 모여 전국의 貢賦와 국가의 錢布를 소비하고, 각처에 屯田하고 柴場을 만드는 폐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保人(奉足) 등 온갖 명목으로 백성을 侵虐하는데 그 중에서 최고로 원망스럽고 괴로운 것은 砲保와 수군이며, 최고로 원망하는 것은 白骨徵布·黃口充丁·隣徵·族徵이다.⁸³⁾

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농포자는 이러한 군제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비록 오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조선후기 5군영을 혁파해야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5군영을 설치한 지가 오래이므로 하루 아침에 혁파하면 군인들이 도둑이 되거나 宿衛 및 禁旅가 허술해질 위험성을 막기 위해, 도성 3軍門 즉 훈련도감·어영청·금위영을 禁衛라는 1개의 군영으로 통합하되 오위처럼 번상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총융청과 수어청을 통합하여 御營으로 하고 경기도의 향병으로 충정하였다. 따라서 농포자는 5군영을 禁旅와 御營 2개의 營으로 축소하였고, 대신 3개의 청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즉 8도에서 勇力이 뛰어난 사람을 사람으로 된 廳을 만들어 禁軍으로 삼으며, 醫員·譯官·寫字官·算員·樂生·唱準·雜類·中人을 수용한 廳 및 書吏·市井輩·匠色을 수용한 廳을 창설함으로써 군역 대상자를 확대하여 民役이 고르지 못한 폐단을 시정하려는 것으로 여겨진다.⁸⁴⁾ 한편 禁衛에 소

83) 鄭尙驥, 『農圃問答』, 設兵制(李翼成 옮김, 『鄭尙驥 農圃問答』, 한길사, 1992, 40-41쪽).

84) 鄭尙驥, 『農圃問答』, 說兵制(李翼成 옮김, 『鄭尙驥 農圃問答』, 한길사, 1992, 47-48쪽).

속된 군인 중 取才를 통해 5,000명을 선발하여 實軍으로 삼고 賞金과 罰錢 제도를 도입하여 무예를 부지런히 익히도록 하였는데, 농포자는 필요한 군문만 설치하고 선발방법과 선발된 자들에 대한 대우 등을 개선하여 군문의 축소로 인한 약점을 보완하면서 국방력의 실질적 증강을 가져오려 한 것이다.⁸⁵⁾

汝寶 禹禎圭(1728)는 경비절감과 정병양성이 곧 국방력강화의 원천이라며 중앙군을 감축하자는 견해를 제시하였다.⁸⁶⁾ 즉 당의 부병도 3천을 넘지 않는데 우리나라와 같은 작은 나라가 훈련도감의 군사로 5천여 명을 양성하는 것은 국력낭비이므로, 3천명으로 한정하여 丁壯만 뽑아 도성을 호위하면 이것이 곧 부국강병책이라고 하였다. 대신 훈국제도에 의해 어영청과 금위영의 군사도 五部에서 소집하여 각각 1,500명씩 두고 每番 500명씩 3번으로 나누어 入直하면 強銳한 군졸이 되어 향군과 비교가 안될 것이고, 2명의 군사가 3천명이고 훈련도감 군사도 3천명이니 도성에 상주하는 군사는 6천명으로 급한 변고에도 믿을만하다고 하였다. 여보는 재정부담이 큰 훈련도감 인원을 감축하면서, 금위영과 어영청에 속한 향군이 질이 떨어지고 난을 당해도 番에 올라온 6초만 활용해서는 적을 감당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1,500명을 선발하여 서울에 상주하게 하였던 것이다. 더욱이 감축된 향군의 원호나 保 모두에게 米布를 징수하여 軍需에 보충하고, 향군과 보인을 속오군에 속하게 한다면 경비절감과 정병양성의 목적을 동시에 실현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18세기의 실학자의 오군영 감축론은 군영의 폐지 또는 축소, 군액의 감축 및 保의 폐지 등으로 나타났다. 17세기 반계가 중앙군을 개혁하기 위해 군영의 폐지 및 군액감축은 물론이고 오위의 복구를 주장했던 것에 비해, 18세기 실학자들은 대부분 오위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85) 신대진, 앞의 박사논문, 97쪽.

86) 禹禎圭, 『經濟野言』, 軍制變通之策(李翼成 畝菴, 『禹禎圭 經濟野言』, 한길사, 1992, 75-81쪽); 趙楨基, 『汝寶 禹禎圭의 國防論』, 『釜山史學』 9, 1985, 347-348쪽.

있었지만 오위를 복구하는 것보다는 5군영을 감축함으로써 국가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고 軍多民少를 시정하여 군역민을 안정시키려 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반계 시대에 비해 18세기는 오군영이 설치된지 오래되어 조선후기 중앙군제로 자리를 잡았음을 의미하며, 반계가 조선전기 오위제와 진관체제를 복구하여 신 군제와 병용하려고 하였던 것과는 달리 18세기 실학자들은 신 군제를 중심으로 개혁을 모색하는 변화가 엿보인다. 아울러 농포자와 여보의 경우에도 중앙군을 전체적으로 감축하였지만 서울에 상주하는 군인의 수는 前과 비슷하도록 하였는데, 그것은 18세기에 도성의 인구가 3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하고 상공업·유통경제의 발달 등으로 도성이 대도시로 변모하자 변화한 도시와 도성민을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1728년(영조 4) 李麟佐 난을 계기로 도성수비체제가 확립⁸⁷⁾되는 시대적 분위기와도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4. 맺 음 말

임진왜란 이후 창설된 중앙의 군영 등은 국가의 재정부담 및 군포의 폐단 등을 심화시켰으나 청의 군대를 효과적으로 격퇴하지 못하였고, 18~19세기에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자 무에 대한 소홀로 인하여 국방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이에 실학자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함으로써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목표로 중앙군제 개혁론을 제기하였다. 실학자들의 방안은 크게 오위제 복구론

87) 이태진, 앞의 책, 1977, 184쪽; 이태진, 앞의 책, 1985, 225-246쪽; 吳宗祿, 「朝鮮後期 首都防衛體制에 대한 一考察 -五軍營의 三手兵制와 守城戰-」, 『史叢』 33, 1988, 28-30쪽; 이근호, 「숙종대 중앙군영의 변화와 수도방위체제의 성립」, 『조선후기의 수도방위체제』, 1998, 62-93쪽; 강성문, 「영조대의 도성 사수론」, 『韓民族의 軍事的 傳統』, 2000, 144-145쪽.

과 오군영 감축론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로 오위제 복구론에 대해 살펴보자. 17세기 반계는 오위제 복구론은 군인에 대한 토지지급, 양민중심의 군인편성, 지휘체계의 개혁 등으로 구분된다. 우선 오위 군인에 대해 토지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반계의 오위제 복구론은 給保에만 의존했던 조선전기의 군사제도에 비해 군인의 처우를 크게 개선하려 한 진보적인 견해이다. 이러한 兵農一致論은 18세기의 성호나 19세기의 다산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며, 국가의 근본인 토지제도의 개혁을 통해 군제의 폐단을 해결하려 하였다라는 점에서 정부의 閑丁收括策이나 지배층 일각에서 제시된 호포론에 비해 종합적이고 본질적인 개혁론이었다. 아울러 토지에 따라 里를 중심으로 군인을 편성함으로써 병역의 기피를 방지하고 전투에서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상황으로는 토지개혁의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비록 재정상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직업군인이나 장기복무하는 군인으로의 전환보다는 병농일치적 오위제를 지향했다는 점에서 복고적인 모습이 엿보인다. 다음으로 일반 양민중심의 오위군 편성은 양반들은 토지를 받으면서도 오위 편성에서 대부분 제외된다는 점에서 戶布論이나 조선전기 五衛制에 비해 반계의 방안이 보수적인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모습은 18세기의 성호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반계는 오위의 지휘체계와 관련하여 허구화된 도총부를 대신하여 오위를 병조에 직접 연결시킴으로서 조선후기의 군영에 비해 公兵의 기능 및 왕권을 강화하려 하였고, 오위장이 지휘하는 위를 확정함으로써 軍政의 폐단을 시정하려 하였다. 다음으로 18세기 실학자들은 성호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오위제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으나, 오군영이 설치된 지 오래되어 조선후기 중앙군제로 정착하였으므로 오위의 복구보다는 오군영의 문제점을 시정하여 중앙군제를 개혁하려 하였다. 17세기 반계는 정부의 재정부담 및 군다민소 등의 폐단을 야기한 新軍制가 淸과의 전쟁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자 군액 감축과 함께 조선전기 오위제를 대안으로 제시하였지만, 18세기 실학자들은 오군영

이 조선후기 중앙군제로 자리를 잡고 도성에 인구가 크게 늘고 상품유통경제의 중심이 되던 시기에 생존하였으므로 오위제의 복구와 같은 조선전기로의 복구보다는 변화한 현실을 바탕으로 5군영 개혁론을 제시한 것으로 여겨진다.

두 번째로 5군영으로 인한 국가의 과도한 재정지출 및 軍多民少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실학자의 오군영 감축론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17세기 반계는 기병·보병·훈련도감·속오군·능로군을 제외하고 모든 군대를 혁파함으로써 국가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군역담당자의 생활을 안정시키려 하였는데, 복구된 오위의 보병과 군액이 1~2천명으로 축소된 훈련도감의 군인을 중앙군의 핵심으로 활용하려 하였다. 다음으로 18세기 이후의 실학자는 조선후기 중앙군제로 자리잡은 오군영제도의 문제를 시정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성호는 도성의 3軍門인 훈련도감·어영청·금위영의 변통책으로 軍需用 米布를 상납하는 保 제도를 점진적으로 혁파하려 하였고, 농포자는 5군영을 2군영으로 감축하는 가운데 取才를 통해 5,000명을 선발하여 賞金과 罰錢 제도를 도입하여 무예를 부지런히 익히도록 함으로서 군문의 축소로 인한 약점을 보완하면서 국방력의 증강을 꾀하였다. 여보는 경비절감과 정병양성을 위해 훈련도감의 군대를 3천명으로 감축하고 동시에 어영청과 금위영의 군사도 감축하되 1,500명을 서울에 상주시켜 중앙군사력의 강화를 꾀하고, 兩營의 혁파된 원군과 보에게 米布를 징수하여 軍需에 보충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을 속오군에 충정하여 지방군을 강화하려 하였다. 그런데 중앙군의 오군영 감축론은 정부 관료에게서도 유사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실학자의 고유한 견해는 아니었다.

한편 실학자의 중앙군제 개혁론에서는 반계의 오위제 복구론에서 알 수 있듯이 중세사회가 해체되고 근대사회로 전환하는 실학의 성격이 잘 드러나 있다. 즉 오위농민에 대한 토지지급은 군인에 대한 대우를 개선하면서 군역의 기피와 군포의 폐단 등을 시정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한정수괄책이나 지배층일각에서 제시된 호포론에 비해 진보적이며 종합적이고 본질적인

개혁이다. 하지만 오위의 일반 양인 편성론에서는 양반들은 토지를 받으면 서도 대부분 군역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조선전기 오위제나 호포론에 비해 국민개병적 성격도 약하고 양반 중심의 보수적인 측면이 엿보인다. 이러한 반계의 오위제론에서 보이는 특징은 18세기의 성호 등에게 똑같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조선후기 실학의 한 단면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물론 실학자들 사이에서도 오위제의 복구론에서 알 수 있듯이 17·18세기 시대에 따라 차별성이 발견되었고, 군액감축론은 현종대·숙종대 등에 정부 관료에 의해 꾸준히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실학자만의 고유한 개혁론은 아니었다.

(원고투고일 : 2003. 7. 8, 심사완료일 : 2003. 8. 4)

주제어 : 중앙군제 개혁론, 실학자, 오위제 복구론, 병농일치론, 오군영 축소론

K C I

<ABSTRACT>

A Study on the Reformism for Central Military System from the
Viewpoint of Practical Schools in the Later Cho-sun Dynasty

Seo, Tae-won

In terms of Korean history, Chosun's central military camps established after the *Im-jin War*(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caused deepening national burden of military finances, abuse of *Gun-po*(cloth for exemption from military service) and so forth. However, they failed to defeat Qing's military forces effectively. As the peaceful era came up again to Chosun dynasty in the 18th and 19th century, its regime became more indifferent to military affairs and even warfare. As a result, its national defense power became significantly weakened. Thus, practical schools in the later Chosun dynasty posed the reformism for central military system to correct these problems, so that it may help reduce national burden of military finances, balance the living standards of military soldiers and reinforce national defense. The policies suggested by practical schools can be divided into two directions. One is the revival of the *O-wi system*(the system of 5 military defense organizations as finished in the earlier Chosun dynasty) The other is the opinion for curtailing five military camps.

First, we can go into the revival of O-wi system. Ban-gye had a little more progressive opinion considering that his reformism focused on offering land to each soldier in O-wi military organizations. Compared to former military system only based on salary cloth in the earlier Chosun dynasty, Ban-gye's reformism improved the treatment of soldiers considerably than

before. These opinions for unity of military and farming can be in the same context with those from Seong-ho in the 18th century and Dasan in the 19th century. Besides, in view of his attempts to correct the abuse of military system through reforming land system essential to a nation, Ban-gye's reformism was more comprehensive and substantial, compared to the policy of *Hanjung Sugwal*(a regime policy for incorporating young men exempted from military service into military system) or the policy of *Hopo*(a sort of service exemption tax) advocated by a section of ruling class. Furthermore, his reformism also focused on reorganizing military forces based on *Ri*, the lowest administrative unit, so as to prevent any potential exemption of military service and enhance the efficiency of military forces in actual combats. However, it was hardly feasible to reform conventional land system under the contemporary circumstances in the later Chosun dynasty. Compared to professional soldiers or those in long-term service, Ban-gye's contemporaries didn't well recognize the problems resulting from serving as farmer and soldier. Besides, Ban-gye's advocacy for reorganizing O-wi military forces based on ordinary class reveals somewhat conservative aspects, compared to Hopo policy or former O-wi system in the earlier Chosun dynasty. These aspects can be also seen at Seong-ho's opinions in the 18th century. On the other hand, Ban-gye attempted to connect O-wi directly with *Byeong-jo*(department of national defense in Chosun dynasty) instead of nominal *Dochong-bu*(former supreme national defense organization), so as to boost up the functions of public military forces and ultimately reinforce sovereign power. Moreover, he attempted to define the *Wi*(a unit of military organization) supervised by the chief of O-wi to correct the evil practices of military administration. Practical Schools in the 18th century turn to the policy for curtailing the organizations of 5 central military instead of the revival of O-wi system.

Secondly, we can turn to the policy for curtailing the organizations of 5 central military camps as advocated from practical schools in order to

correct evil practices of military service system resulting from excessive military power based on minor people in the later Chosun dynasty.

Above all, Ban-gye attempted to reform all military organizations but cavalry, infantry, *Hul-leon-do-gam*(a sort of capital defense with control over three major artillery forces) and *Sok-o-kun*(a sort of reserve troops) in order to relieve national burden of military finances and balance the living of folks with military service. His military reformism focused mainly on recycling the infantry attached to revived O-wi forces and other forces of *Hul-leon-do-gam* as curtailed into 1,000 or 2,000, all of which could be available as the core of central army forces.

In terms of practical policy for *Hul-leon-do-gam*, *Eo-yeong-cheong*(one of 5 military camps) and *Geum-wi-yeong*(capital defense forces), Seong-ho advocated the gradual reform of conventional Bo(保) system, which obligated offering military rice and cloth to authorities. Nongpoja advocated the curtailing 5 central military camps into 2 camps. Another practical school member, *Yeobo* suggested curtailing the military forces of *Hul-leon-do-gam* into 3,000 to save resulting expenditures and raise picked troops, and also posed curtailing those of *Eo-yeong-cheong* and *Geum-wi-yeong*, so that they could pay rice and cloth as a tax instead of service or could be enrolled into *Sok-o-kun*. Notably, similar versions of the reformative policy for curtailing 5 military camps as originally posed by practical school can be seen in the opinions from contemporary regime officials. That is, the military reformism was not exclusive opinions from practical school in Chosun dynasty.

Key Words : The Reformism for Central Military System, Practical Schools, The revival of O-wi system , These opinions for unity of military and farming, The policy for curtailing the organizations of 5 central military camps